

□ 2024년까지 신선 우유 자급자족 100% 달성 목표

- 말레이시아 정부가 향후 5년간 신선 우유, 쌀, 반추동물의 생산에 있어서 자급자족 수준(SSL)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, 2018년 11월 기준 자급자족도 신선 우유 50%, 쌀 70%, 반추동물 24% 수준을 각각 100%, 75%, 30%로 끌어올려 수입 의존도를 낮출 계획임을 밝힘
- 특히, 신선 우유의 경우 2024년까지 완전 자급자족 수준으로 달성하여, 연간 6천5백만 리터에 달하는 생산량을 국내에서 감당하겠다는 계획
-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유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지 농가와 네덜란드의 농민들 간의 전문성 교환 프로그램인 ‘파머투파머’ (Farmer2Farmer) 프로그램을 개시
- 이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식품 기업 ‘로얄 프리슬란트 캄피나 NV’의 낙농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, 네덜란드 대사관의 지원 하에 ‘Dutch Lady Malaysia’와 말레이시아 수의서비스국(DVS) 간 스마트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임
- Farmer2Farmer 론칭 행사에 참석한 주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대사관 Karin Mössenlechner 대사는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가 많은 공통점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으며, 농산물과 유제품 생산 분야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, 지식과 기술,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Farmer2Farmer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했다

- Farmer2Farmer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농장의 생산성과 생산 방법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말레이시아와 네덜란드 양국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협력하고 산업을 개선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

* 출처 : Bernama(2020.02.11.)

II

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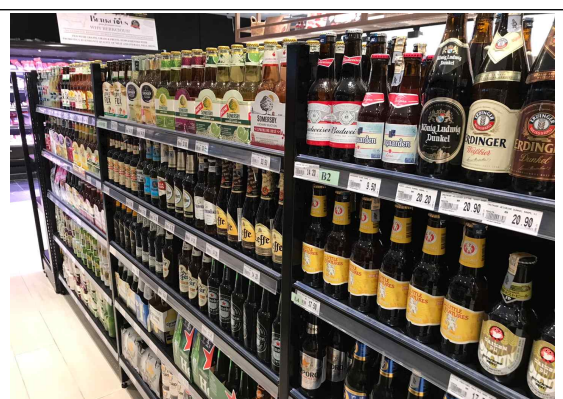
□ 주류 판매 시 주의사항

- 주류 판매 시 면허(licence)가 필요
 - 말레이시아 관세법(Malaysia's 1976 Excise Act Law)에 의하면, 말레이시아의 모든 벤더, 소매점, 가게, 식당은 어떠한 형태의 주류를 판매하든 면허(licence)를 취득해야 함
- 면허(licence)없이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경우 있음
 - 말레이시아 관세법(Malaysia's 1976 Excise Act Law)은 32조 (1)절에 예외조항 명시
 - 적절한 밀봉과 온전한 캡슐을 가진 미 개봉된 병 혹은 캔에 담긴 맥주 및 토디(Toddy)를 소매 판매하는 경우
 - 사바(Sabah)에서, 원주민에게 증류되지 않은 토산주를 소매 판매하거나 소매 판매를 위한 토산주를 제공하는 경우
 - 1967년 관세법 제65조에 따라 허가된 면세점에서 주류를 소매 판매하는 경우
- 불법 주류 판매 예시
 - 카페나 다른 벤더들이 면허(licence) 없이 맥주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나, 공공연하게 맥주가 판매 및 소비되고 있음

- 그 외에도, 몰래 담근 술 밀주(illicit “moonshine” alcohol)가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음(Samsu, Tuak, Toddy 등)
- 까다로운 주류 진열대 규정
 - 말레이시아 식품규정 1985 (Food Regulation 1985) 361조 개정안에 의하면 주류 진열대는 아래의 규정을 따라야 함
 - 주류 진열대는 다른 식품의 진열대와 구분되어야 함
 - 주류 진열대는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함. 문구는 빨간 바탕, 굵은 글씨 48포인트 이상, 기울어지지 않은 글씨체의 「MEMINUM ARAK BOLEH MEMBAHAYAKAN KESIHATAN」(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)



▲ 현지 대형유통매장 NON-HALAL 코너에 위치한 주류 매대



▲ 수입맥주 진열대

- 대형유통채널에서는 NON-HALAL 코너에서 주류를 판매함(술은 하람이기 때문에 할랄인 식품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여김)

□ 밀수 랍스터 압수

- 어떠한 문서 자료도 없이 인도네시아로부터 밀수되던 랍스터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청사(KLIA2)의 검역 서비스부(MAQIS)에서 적발됨
- 검역부는 말레이시아 세관(JKDM)과의 공조를 통해 항공노선을 이용한 인도네시아인 승객 1명을 적발하고 수하물 조사를 통해 랍스터 70마리를 압수함
- 이 승객은 개인적인 용도로 랍스터를 구매해 들여왔다고 주장
-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나 말레이시아 수입 허가증 등 해산물 유입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가 전혀 없었음
-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부에 따르면, 유효한 허가 없이 새우를 수입하는 행위는 검역 검사 서비스법(Malays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 act 2011) 11조에 의거 범죄 행위로 규정되며, 동일법 11조 3항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
-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10만링깃 벌금형이나 6년 이하 징역형,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

* 출처 : HMETRO(2020.03.11.)